

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



진도군농업기술센터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변경

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2020.1.1.부터 시행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농기계 임대료를 산정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1. 근거법령

가.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

나. 「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별표 1(개정 2019.9.25.)

2. 임대료 규정 변경

구 분	2019.12.31.이전	2020.1.1.이후
임대료 결정	운영위원회(조례)	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
임대료 산정	1,000만원미만 : 구입가격의 0.4% 1,000만원이상 : 구입가격의 0.3% 하한가 5,000원, 상한가 70,000원	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18개 구간별 임대료 규정

3. 임대료 결정: 불임 1 참조

※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」에서 정한 구간별 임대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른 1일 임대료의 -15%(백단위 절상) 임대료를 2020.1.1.부터 소급적용

불임: 1.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산정 1부.

2. 전남 시군 임대료 현황 1부. 끝.

농업기계팀장 조민규 경영지원과장 곽성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인 부군수 정현인
군수 이동진
2020. 2. 20.

협조자

시행 농업기술센터-2076

접수

우 58904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97

/ <http://jindo.jares.go.kr/>

전화번호 061-540-6133

팩스번호 061-540-6199

/ chodrifish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주민등록번호! 법령근거 없이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!